

서울特別市永登浦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1일

〈제13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財務局長 金興權)

가. 제안이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인 본 조례에
감면대상으로 추가 신설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진흥법('91. 3. 8 법률 제4352호)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사유로 과세를 아니할 수 있으며

- 동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조례개정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 제2조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제6호로 신설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구는 위 규정을 적용받는 도서관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입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심 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

(재적위원 11명

출 석 10명

찬 성 10명

반 대 없음)

서울特別市永登浦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 |
|----------|----|
| 의안 번호 | 98 |
|----------|----|

제출년월일 : 1992년 8월 28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인 본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 신설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3. 관련법류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4. 개정근거

세정 22670-730 ('92. 8. 3)호로 내무부장관의 개정준칙안 시달로 허가가름

5. 예산상황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新 · 舊條文對備表

| 현 | 행 | 개 | 정 | 안 |
|---|---|---|---|---|
| <p>제2조 (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 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 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p>제2조 (면제대상)</p> <p>.....</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u>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u> | | | |